

알아두면 유익한

해외 직구 통관 길라잡이

2018

관 세 청
특 수 통 관 과

목 차

I. 통관 일반

- 1. 해외 직구 유형 1
- 2. 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 2
- 3. 목록통관 배제 품목 3
- 4. 자가사용 인정기준 4
- 5. 합산 과세 제도 5
- 6. 물품가격 및 과세가격 6

II. 개별물품 통관 방법

- 1.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? 7
- 2. 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? 8
- 3. 전자제품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하나? 9
- 4. 총포, 도검 통관 방법은? 9
- 5. 향수의 면세 기준은? 9
- 6. 화장품의 통관 방법은? 10
- 7. 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? 11
- 8. 담배의 면세 기준은? 11
- 9. 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? 11

III. 기타 FAQ

- 1.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? 12
- 2. 통관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은? 13
- 3. 예상세액 계산 방법은? 14
- 4. 무료 배송인 경우 운임 적용 방법은? 15
- 5. 할인 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? 15
- 6. 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된 경우 어떻게 하나? 15
- 7.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? 16
- 8. 면세 받은 물품을 재판매해도 되나? 16

I. 통관 일반

1 해외 직구 유형

□ 해외 직구 유형은 아래와 같이 3가지의 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
1 직접배송

○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하고 직접 배송받는 방식

2 배송대행

○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결제 및 배대지 입력

○ 배송대행업체가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배송받는 방식

3 구매대행

○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에 물품가격, 물류비, 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든 절차를 위임하는 형태



2

해외 직구 물품 통관 방법

□ 직구물품 통관 방법은 목록통관,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.

○ 목록통관

-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,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(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)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

○ 수입신고

-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관세사를 통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서 관세 및 부가세 부과
- 다만,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(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)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

3

목록통관 배제 품목

-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식품류, 검역대상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.

<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 예시 >

| 번호 | 구분 | 예시(빈번 반입품) |
|----|---|--|
| 1 | 의약품 | 파스, 반창고, 거즈 · 붕대, 항생물질 의약품, 아스피린제제, 소화제, 두통약, 해열제, 감기약, 임신테스터기, 발모제 등 |
| 2 | 한약재 | 인삼, 홍삼 등 |
| 3 | 야생동물 관련 제품 | ‘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·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’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 (예) 상아제품, 악어가죽 제품, 뱀피 제품 등 |
| 4 |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| 커피(원두 등), 차, 견과류, 씨앗, 원목, 조제분유, 고양이 · 개 사료, 햄류, 치즈류 등 |
| 5 | 건강기능식품* | 비타민 제품, 오메가3 제품, 프로폴리스 제품, 글루코사민 제품, 엽산 제품, 로열젤리 등 |
| 6 |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| 짜퉁 가방 · 신발 · 의류 · 악세사리 등 |
| 7 | 식품류 · 주류 · 담배 | 비스킷 · 베이커리, 조제커피 · 차, 조제과실 · 견과류, 설탕과자, 초콜릿식품, 소스 · 혼합조미료 · 담배 · 주류 등 |
| 8 | 화장품(기능성화장품(미백 · 주름개선 · 자외선 차단 등), 태반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) | |
| 9 |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| |
| 10 | 통관목록 중 품명 · 규격 · 수량 · 가격 · 수하인주소지 · 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| |
| 11 | 기타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| 총포 · 도검 · 화약류, 마약류 등 |

4

자가사용 인정기준

□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며 개별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이 있는 품목의 경우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| 종류 | 품명 | 자가사용인정기준 (면세통관범위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|---|
| 농림수 축산물 | 참기름, 참깨, 꿀, 고사리, 버섯, 더덕 호두 잣 소, 돼지고기 육포 수산물 기타 | 각 5kg 5kg 1kg 각 10kg 5kg 각 5kg 각 5kg | ○ 면세통관범위 초과 시 요건확인대상 (식물방역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수산동물질병관 리법 대상은 면세통관범위 이내의 물품도 반드 시 요건확인을 받아야 함) |
| 한약재 | 인삼(수삼,백삼,홍삼 등) 상황버섯 녹용 기타 한약재 | 합 300g 300g 검역후 150g 각 3kg | ○ 녹용은 검역후 500g(면세범위 포함)까지 과세통관 ○ 면세통관범위 초과 시 요건확인대상 |
| VIAGRA 등 오·남용우려의약품 | | | ○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|
| 건강기능식품 | | 총6병 | ○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 면제. |
| 의약품 | | 총6병(6병 초과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) | ○ 다만, 다음의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- CITES규제물품(예시향 등) 성분이 함유된 물품 -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- 에페드린, 놀에페드린, 슈도에페드린, 에르고타민,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원제의약품 ○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. 다만,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 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|
| 생약(한약) 제제 | 모발재생제 제조환 다편환, 인삼봉황 소염제 구심환 소갈환 활락환, 삼편환 백봉환, 우황청심환 | 100ml×2병 8g入×20병 10T×3갑 50T×3병 400T×3병 30T×3병 10알 30알 | |
| 기호물품 | 주류 귤련 엽귤련 전자담배 기타담배 향수 | 1병(1ℓ 이하) 200개비 50개비 니코틴용액 20ml 250g 60ml | ○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과세대상 ○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 과세 |
| 기타 | ○ 기타 자가사용물품의 인정은 세관장이 판단하여 통관허용 ○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의 경우 각 법령의 규정에 따름 | | |

-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.
 -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
 - 다만,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,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
-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 - 1) 하나의 선하증권(B/L)이나 항공화물운송장(AWB)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
 - 2)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(B/L 또는 AWB기준)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. 다만,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
 - 3)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

6

물품가격 및 과세가격

-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,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, 운송료, 보험료가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.
-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.

| 목록통관 기준금액은? | 목록통관 기준금액 계산 | 150불 초과 | | | | | |
|---|---|---------|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목록통관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 다만, 한미 FTA에 따라, 미국에서 구입하여 미국에서 발송되는 제품에 한해 미화 200불까지 목록통관이 가능 합니다. | <table border="1"><tr><td>물품가격</td></tr><tr><td>+</td></tr><tr><td>발송국가 내 세금</td></tr><tr><td>+</td></tr><tr><td>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</td></tr></table> <p>(발송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)</p> | 물품가격 | + | 발송국가 내 세금 | + |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 |  <p>목록통관 기준금액 초과 시 에는 일반수입신고 절차가 진행되므로, 이에 따라 물품 가격 미화 150불 초과시에는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.</p> |
| 물품가격 | | | | | | | |
| + | | | | | | | |
| 발송국가 내 세금 | | | | | | | |
| + | | | | | | | |
| 발송국가 내 내륙운임 및 보험료 | | | | | | | |

II. 개별 물품 통관 방법

1

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?

□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.

○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(6병 이내) 반입 하더라도,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정식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.

○ 자가사용 인정기준(「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67조 및 [별표 11])

| 종 류 | 자가사용인정기준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VIAGRA 등 오·남용우려의약품 | | ○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 |
| 건강기능식품* | 총 6병 | ○ 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(식약처의 사전 수입승인) 면제 다만,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- CITES규제물품(예: 사향 등) 성분이 함유된 물품 -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|
| 의약품 | 총 6병 (6병 초과인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) | - 에페드린, 놀에페드린, 슈도에페드린, 에르고타민,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의약품 ○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. 다만, 환자가 질병치료 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|

*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(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
2

건강기능식품의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하나?

-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관세청은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습니다.
-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의 [위해예방정보](#) » [해외직구정보](#) » [위해식의약품 정보](#)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.

[식약처 식품안전나라]

식품안전정보포털
식품안전나라

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**식품안전정보 전문 채널!**

통합검색 [] 검색 메뉴 화면에 보기 +

인기검색어 ▶ 생산실적보고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회수제품

식품 안전정보 | 위해·예방정보 | 건강·영양정보 | 식품전문정보 | 이슈·뉴스·홍보·교육

이런식품
드시지 마세요

불량식품
신고하시겠습니까?
1399

업체, 제품 정보가 궁금하세요?

우리동네
음식점은 안전할까?

우리회사
안전관리서비스

전문정보관

- 식품공전
- 식품안전관리체계
- 식품안전법령맵
- 식품행정업무안내
- 전문DB관
- 용어사전

3

전자제품(TV, 스마트폰 등)은 왜 1대만 통관이 가능한가?

- TV 등 전자제품은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, 스마트폰 등 통신용품은 「전파법」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동 법령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1개의 제품만 별도의 수입 승인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델별 각 1대는 통관이 가능합니다.

4

총포·도검 통관 방법은?

- 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총포·도검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발사할 수 없는 모형 총, 주방용 칼, 날이 서있지 않은 칼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통관이 가능합니다.
- 총포, 도검에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물품의 경우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

향수의 면세 기준은?

- 향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60ml 이하(병수 제한 없음)이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6

화장품의 통관 방법은?

- 화장품*은 기능성화장품, 태반함유화장품,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을 제외하고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.
- 화장품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결정합니다.
- 기능성화장품이란 「화장품법」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.
 - ①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
 - ②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
 - ③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
 - ④ 모발의 색상 변화·제거 또는 영양공급에 도움을 주는 제품
 - ⑤ 피부나 모발의 기능 약화로 인한 건조함, 갈라짐, 빠짐, 각질화 등을 방지하거나 개선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제품
- 기능성화장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품명·규격 항목에 “기능성 없음” 표시를 권고합니다.
(예 : non-functional cosmetic, cosmetic without function 등)
-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은 미국에서 발송되어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7

아기 분유의 통관 절차는?

- 분유는 검역대상 물품으로 목록통관에서 제외되고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.
- 분유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5kg 이하이며,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때에만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8

담배의 면세 기준은?

-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껴련 200개비, 엽껴련 50개비,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.
- 다만,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.

9

주류의 자가사용 인정기준은?

- 주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1L이하(1병)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- 다만, 주류는 주세 납부 대상으로 물품가격과 관계없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입니다.

III. 기타 FAQ

1 해외 직구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?

- 직구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.
-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개인 확인을 위한 고유부호이며,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(<https://p.customs.go.kr>)에서 성명, 핸드폰 번호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쉽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[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]

The screenshot shows the 'PUNI-PASS' website interface for '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' (Personal Customs Unique Number Issuance). The main banner features the text: '한번에 쉽고 간단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이용가능합니다.' (Once, easy and simple personal customs unique number issuance is available without membership registration). Below this, it states: '※ 부호발급 후 사용장치는 가능하나 삭제는 할 수 없음' (After issuance, usage is possible but deletion is not). The text also mentions that since July 20, 2015, issuance is possible via public internet certificates, mobile phones, and smart devices. A navigation sidebar on the right includes '진행순서' (Progress), '최초 접속자 안내' (First-time user guide), and '공인인증서 프로그램 다운로드' (Download public certificate program). The main content area has a search bar with fields for '성명' (Name) and '주민등록번호' (Residence registration number), and a '확인' (Check) button. Below the search bar, there are three service icons: '신청 매뉴얼' (Application manual), '자주하는 질문' (Frequently asked questions), and '세관발급신청 안내' (Customs application notice). The footer contains the UNI-PASS logo, address (35208 Daegu National University), copyright notice (Copyright 2015 관세청 All Right reserved.), and a small logo.

2

통관 진행 상황 확인 방법은?

- 해외 직구 물품의 운송장 번호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 앱 및 홈페이지(www.customs.go.kr)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[관세청 홈페이지 수입화물 진행 조회]

The image shows a screenshot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website. At the top,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the Korea Customs Service logo and search options. Below the navigation bar, there are several service categories. A red circle highlights the '수입화물통관 진행조회' (Import Goods Clearance Status Inquiry) icon in the '조회업무서비스' (Inquiry Services) section. A red arrow points to this icon. The website also features a '국민신청실명제' (National Applicant Real Name System) announcement and a 'Quick Menu' on the right side.

3

예상세액 계산방법은?

□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.

| 구분 | 세액 | |
|-----|------------|--|
| 관세 | 과세가격 × 관세율 | |
| 내국세 | 개별소비세 | (과세가격 + 관세) × 개별소비세율 |
| | 주세 | (과세가격 + 관세) × 주세율 |
| | 농어촌특별세 | 개별소비세액 × 농어촌특별세율 |
| | 교육세 | 개별소비세액 × 교육세율 주세액 × 교육세율 |
| | 부가가치세 | (과세가격 + 관세 + 개별소비세 + 주세 + 농어촌특별세 + 교육세) × 부가세율 10% |

※ 종가세 기준이며, 세액은 경우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※ 개별소비세, 주세, 농어촌특별세, 교육세는 해당 세액이 있는 경우에 부과

□ 일반수입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(예시)

| 예시 | 세액 계산 |
|-------------|--|
| 의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세가격 : 200,000원 ⇒ 예상세액 : 48,600원 - 세액 48,600원 = ①관세 26,000원(과세가격 200,000원 × 관세율 13%) + ②부가가치세 22,600원((과세가격 + ①) × 부가세율 10%) |
| 담배 (1보루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세가격 : 200,000원 ⇒ 예상세액 : 114,534원 - 세액 114,534원 = ①관세 80,000원(과세가격 200,000원 × 관세율 40%) + ②개별소비세 5,940원 + ③부가세 28,594원((과세가격+①+②) × 부가가치세율 10%) ※ 담배 1보루당 담배소비세(10,070원), 지방교육세(4,430원) 별도 부과 |
| 와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세가격 : 200,000원 ⇒ 예상세액 : 136,490원 - 세액 136,490원 = ①관세 30,000원(과세가격 200,000원 × 관세율 15%) + ②주세 69,000원((과세가격 + ①) × 주세율 30%) + ③교육세 6,900원(② × 교육세율 10%) + ④부가세 30,590원((과세가격 + ① + ② + ③) × 부가세율 10%) |

※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는 관세,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며, 관세율은 관세의 종류(예 : FTA 협정 관세)에 따라 달라짐

※ 예상세액조회는 관세청홈페이지 >> 조회업무서비스 >> 예상세액조회 >> 해외직구 탭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4**무료배송인 경우, 운임 적용방법은?**

- 해외인터넷사이트(판매사이트)에서 배송료 할인행사를 하는 경우,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(예 : 금액과 상관없이 할인)이라면 해당 운송비를 할인받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터넷 사이트에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다면 해당 할인금액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5**할인쿠폰을 사용한 경우 가격 적용은?**

- 판매사이트 가입시 발급되는 할인쿠폰, 축하금 등 해외판매자가 부담하고 구매자 누구나 제한이나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은 할인받은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6**물품금액이 잘못되어 과세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?**

- 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어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가격 증빙 자료 등을 세관에 제출하여 면세가 가능합니다.
- 다만,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경우에는 면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, 세금이 부과된 경우 세금을 납부하지 말고 즉시 세관 또는 관세사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.

7**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환급이 되나?**

-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 신고를 하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수입한 상태 그대로 개인이 직접 수출신고 하거나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출 신고를 하고, 관세 환급 신청을 하면 수입할 때 납부 하였던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8**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해도 되나?**

- 자가 사용,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면세 받았기 때문에 자가 사용 목적으로 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하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,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.